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821호 2021. 9. 8.(수)

거창 후 거창

선결	기관의 장

고 시

제2021-128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
제2021-130호 도로명주소 고시 ····· 3

공 고

제2021-1314호「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5
제2021-1318호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 13
제2021-13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 14
거창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12 2021년도 제3회 거창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 15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1-128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구명	위치	지정개요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고견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일원	침수 위험	가	109,029	고견지구는 다수의 잠수교 및 취수보로 인한 계획홍수위 상승 및 상류측 토사퇴적에 의한 통수단면이 부족함. 고견천 좌안측 농경지는 제방이 설치되지 않아 월류피해가 발생하며, 상수월마을 내 우수관거 용량부족으로 인한 주거지 내수침수 발생.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부.

2021년 9월 6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고시 제2021 - 13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9. 8.

거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노루고개길 228 등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73-9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노루고개길 228	20210908	20090401	노루고개길이라는 옛지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476-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7길 70	20210908	20160420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476-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7길 74	20210908	20160420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73, 237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단지1길 7	20210908	20170719	승강기전문농공단지 특성 반영	건물번호 부여	

거창군 공고 제2021-1314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장학회 지도·감독 규정** 및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출연금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장학회의 위법·부당한 행위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나. 기록물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인력지원 개정(안 제12조)

나. 지도·감독 개정(안 제13조)

다. 장학회에 대한 제재 신설(안 제14조)

라. 기록물 관리 조항 신설(안 제15조)

4. 예고기간 : 2021. 9. 3.(금) ~ 9. 23.(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9. 23.(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1) 주소 : (우 50130)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인구교육과)

2) 전화 055-940-8812, 팩스 055-940-8905, 이메일 011time@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교육진흥담당 【☎(055)940-88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공무원의 인력지원) “장학회에 인력지원 할 수 있다.” 를 “장학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장학회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때에는 장학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의 운영 실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학회가 업무를 수행함에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① 군수는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임원의 교체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② 장학회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기록물 관리 등) 장학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회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2조(공무원의 인력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인력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인력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장학회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한 때에는 장학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의 운영 실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학회가 업무를 수행함에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①군수는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임원의 교체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신 설>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② 장학회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물 관리 등) 장학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회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5조(지도 · 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 · 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 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 · 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거창군 공고 제2021-1318호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3항에 따라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거 창 군 수 ㊞

1. 전자우편 주소 : geochang@korea.kr

2. 접수기간 : 2021. 10. 10.(일) ~ 2022. 1. 8.(토)

※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음.

거창군 공고 제2021-13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7호 , 「자동차등록령」제3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9. 7.(화) ~ 2021. 9. 22.(수)
3. 공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자동차 소유자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저당권자)	송달지	반송사유
차량번호	차명	성명				
82수4745	봉고프런티어	오*종	저당을부번호 : 4826-2000-000084	최*덕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	수취인불명

5. 기타사항
   ○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후에는「자동차등록령」제31조5항의 규정에 따라 말소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민원담당(☎055-940-3295)

2021년 9월 7일

거 창 군 수

거창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12

2021년도 제3회 거창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2021년도 제3회 거창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8일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비고
거창사건사업소	국화재배 업무전반	지방농업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행정과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급)	1명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일반임기제 : 만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 시간선택제임기제 : 만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나. 자격기준 : 다음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기준일 : 면접시행 최종예정일)

분 야	자 격 요 건
국화재배 (일반 임기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원예, 화훼, 양묘 등
안 전 관리자 (시간선택 임기제)	**(필수)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등 산업안전 관련 학과
	(경력)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임용 후 수행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다만,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 주20시간 근무)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5항)

다. 직무내용

근무 부서	임용예정 분 야	임 용 예정등급	인원	직 무 내 용
거 창 사 건 사업소	국화재배 업무전반	지방농업 주 사 보 (일반임기제)	1명	○ 국화전시회를 위한 기획 및 국화재배 전반 ○ 국화재배 인부사역 및 관리 ○ 그 밖에 지시받은 사항
행정과	안전 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조치 ○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리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진정 사건 등 대응 ○ 그 밖에 지시받은 사항

3.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안전관리자), 시행령 제16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0조(위탁규정 삭제)

4. 임용 기간 및 근무시간

○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일반임기제 : 주당40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주당35시간

5. 보수 수준

○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되 임용 예정자의 경력·자격·능력 등을 고려하여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결정 가능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7급(상당)	62,675	44,514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48,111	34,320

※ 연봉외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2021. 9. 23. ~ 9. 27.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	2021.9.29.(수)	2021.10.5.(화) 거창군청	2021.10.12.(화)

⇒ **합격자 발표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business)에 게시**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기준 적합여부 서면 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검정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접수장소 :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2층)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시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거창군 수입증지 대신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람**

※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등기용 우표 부착**'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우편접수 시 거창군 행정과 사전연락 바람 (055-940-3176)

9.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10.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2매 제출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함.

- 응시수수료 : 거창군수입증지(거창군청 내 민원소통과 판매)
  - ▸ 7급 7,000원, 8급(라급) 5,000원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 됨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자격, 경력, 학위 등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에 한함)
○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 · 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필요시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제출(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상·중·하의 개수)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집계 결과)
○ 전형결과 적임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12. 응시자 유의사항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바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림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됨
○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거창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거창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행정담당(☎055-940-3176)로 문의하시기 바람

13. 코로나19 예방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 면접시험일까지 중국 등 외국 및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 방문 자제
○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체크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원서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등 외국 또는 국내 유행지역을 방문하였거나 확진자와 접촉 후 고열(37.5℃이상),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 및 검사 실시
  * 신 고 처 : 질병관리본부콜센터(1339), 거창군 행정과(055-940-3176)

❍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면접시험 관련 사전 안내

① (시험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업무배제
②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③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④ (응시자 및 감독관) 출입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 씻기 등을 실시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스스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질병관리본부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
- 개인 음용수 준비

<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확 진 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 곤란 등) 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감 염 병 의 심 자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균자와 접촉 또는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의2호(2020. 3. 4. 시행)

※ 모든 응시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코로나19 예방조치 소홀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지자체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친 적이 있는지 여부도 유심히 살펴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3회 거창군 임기제공무원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분야		응시번호	생년월일	성 명
임용 부서		(담당자 기재)		
분야				

연번	제 출 목 록	제출여부
1	응시원서 ▹[서식1]	
2	이력서 ▹[서식2]	
3	자기소개서 ▹[서식3]	
4	직무수행계획서 ▹[서식4]	
5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6	주민등록초본 ▹ 전체 주소변동내역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7	자격검증 동의서 ▹[서식5]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6]	
9	기타 개별 자격증 및 경력사항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 업무분장 등 경력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해당자만)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 표시

[서식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1년도 거창군 제3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거창군 수입증지 날인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印

응 시 표 (2021년도 거창군 제3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21년 월 일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시간선택제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거창군 수입증지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증지 날인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라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원서는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제 응시자 책임입니다.**

[서식2]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담당자기재	응시 분야		성 명	

나.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 학위만 기재)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서식3]

자 기 소 개 서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성명	
			2021. . . 작 성 자 : (인)		

[서식4]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성명	
2021. . . 작 성 자 : (인)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하는 분야 (담당업무)를 참고하여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의 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순으로 작성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포함)

성　　명		임용분야	
생년월일	.　.　.		

본인은 거창군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3회 거창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동 위원회가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ㆍ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과 임용 절차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시험 전형 자료,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채용시험 관련 자료 폐기 시까지

또한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할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1. 이용기관 명칭 :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임기제공무원 채용절차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